

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체간의
거래실태조사결과

2002. 11

중소기업청
조사평가과

목 차

I. 설문조사 개요	1
II. 조사결과	2
1. 요약	2
2. 세부 조사내용	3
가. 중소납품업체 현황	3
나. 납품대금 결제방법 및 결제기간	5
다.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	7
라. 거래애로 및 건의사항	10
III. 향후 조치계획	11

붙임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소간의 거래실태 설문조사서

I. 설문조사 개요

□ 조사목적

- 대형유통업체(백화점 및 대형할인점)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일반 현황조사 및 애로발굴

□ 조사기간 : 2002. 10. 17 ~ 11. 12

□ 조사대상업체 :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500개 중소기업중 응답업체 57업체 (회수율11.4%)

□ 조사방법 : 우편 및 FAX설문조사

□ 조사내용

- 거래일반현황, 유통업체별 매출액 및 거래형태
- 납품한 물품대금 결제방법 및 기간
-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요구사례
(물품대금감액, 반품요구, 납품상품 수령거부 등)
- 대형유통업체의 위법부당한 요구 사례
(상품권 구매, 경품류 제공, 광고비 부담, 판촉요원 파견, 매장수리비 부담 등)
- 기타 거래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

II. 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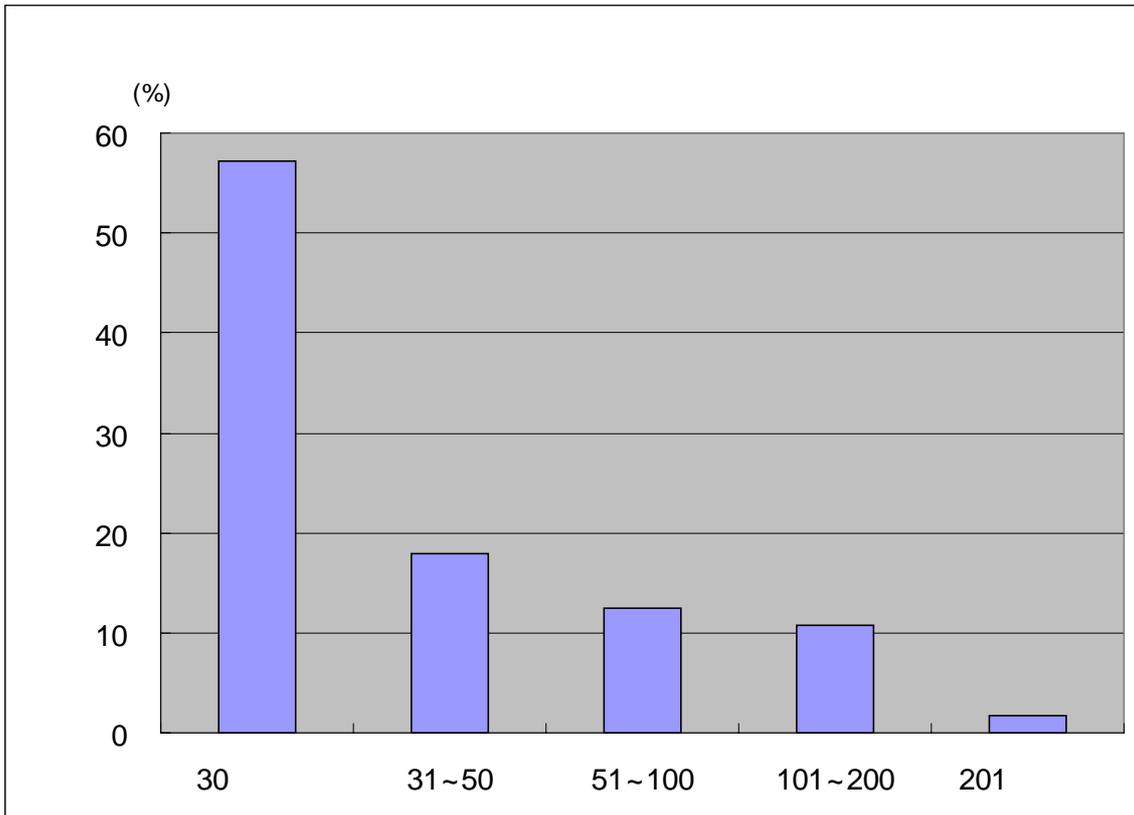
1. 요약

-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종업원수는 75%가 50명이하의 소기업으로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액의 비중이 50% 이상인 업체가 70.2%로 판매의존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
 - 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특정매입(48.6%), 직매입(45.4%), 하도급(6.0%) 순이고
 - 납품 업체당 평균 납품금액은 3.2억인 것으로 조사됨
- 중소납품 업체의 납품대금 결제 수단은 현금 78.9%, 어음 21.1%로서 지난 2001년의 현금비중 87.5%보다 8.6%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
- 납품대금 수급에 있어 60일 초과한 경우는 지연이자 또는 어음 할인료를 지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74.1%가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,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3.7%인 것으로 조사됨
-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는 상품권 구매요구(42.9%), 경품류 제공요구(40.0%) 광고비 부담(52.8%), 판촉사원 파견요구(56.4%) 등으로 조사됨
- 거래시 겪는 주요애로사항은 판매수수료(20.8%), 거래지속여부(14.8%), 매장위치변경(13.4%), 광고비전가(10.7%), 경품류제공강요(8.7%) 순으로 조사됨

2. 세부 조사내용

가. 중소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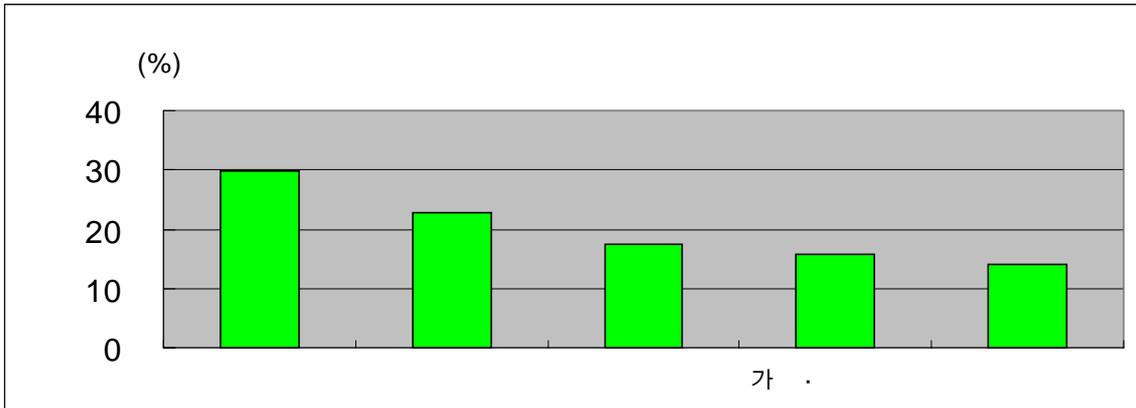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 중소기업체의 종업원수는 30人以下(57.1%), 31~50人以下(17.9%), 51~100人以下(12.5%) 순으로 응답함
- 또한 종업원이 101~200인(10.7%) 및 201인 이상인 업체도 1.8%인 것으로 조사됨



종업원수	30人以下	31~50人以下	51~100人以下	101~200人以下	201인 이상	계
비율(%)	57.1	17.9	12.5	10.7	1.8	100

□ 주거래 대상품목은 의류(29.8%), 생활용품(22.8%), 음식료(17.5%)가 주류인 것으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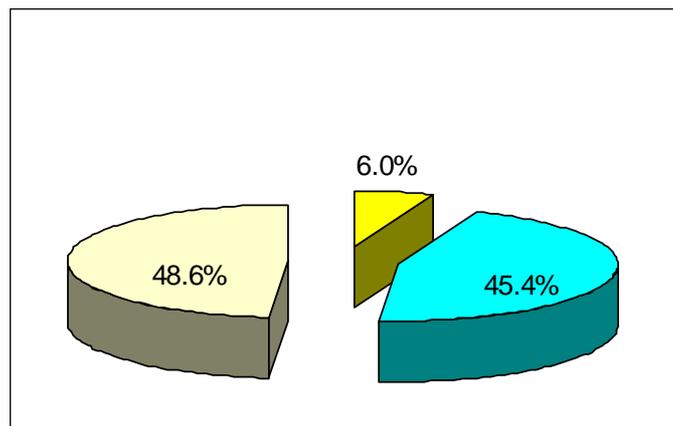
○ 그 밖에 가구·주방기구(15.8%), 기타(14.0%) 순으로 조사됨



품 목	의 류	생활용품	음식료	가구·주방기구	기 타	계
비율(%)	29.8	22.8	17.5	15.8	14.0	100

□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 및 평균 납품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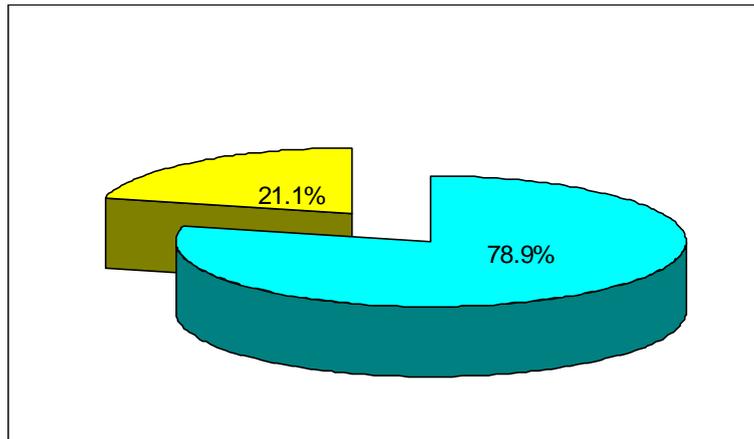
○ 거래형태는 특정매입(48.6%), 직매입(45.4%), 하도급(6.0%) 순으로 나타남



○ 또한 납품업체당 평균납품금액은 3.2억원이며,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액의 비중이 50%이상인 업체가 70.2%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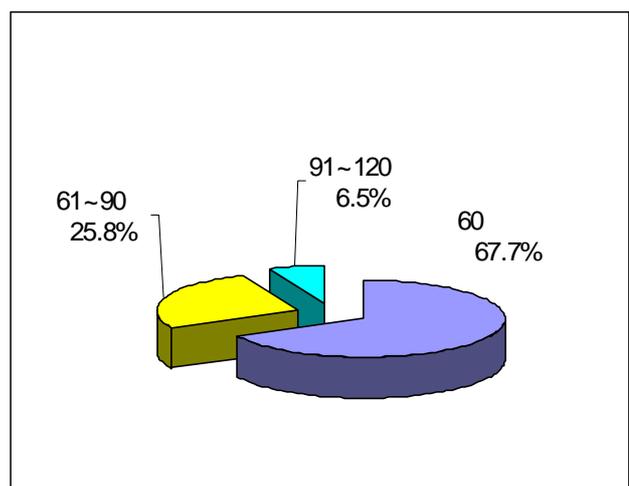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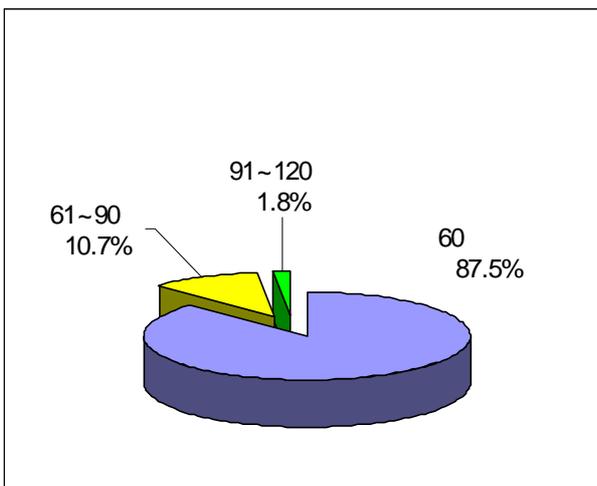
나. 납품대금 결제방법 및 결제기간

- 중소기업업체의 납품대금은 현금 78.9%, 어음 21.1%로서 현금지급 비중은 2001년의 87.5% 보다 8.6% 낮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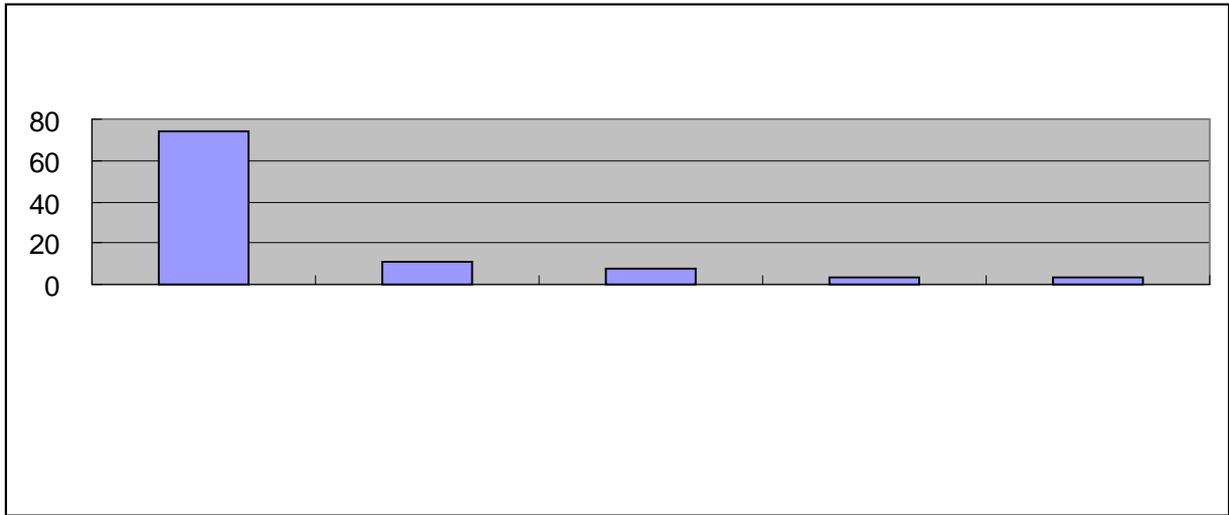


- 납품대금 결제에 있어 현금결제는 60일이하 87.5%, 61~90일 10.7%, 91~120일이하 1.8% 순이고

- 또한 어음결제는 60일이하 67.7%, 61~90일이하 25.8%, 91~120일이하 6.5%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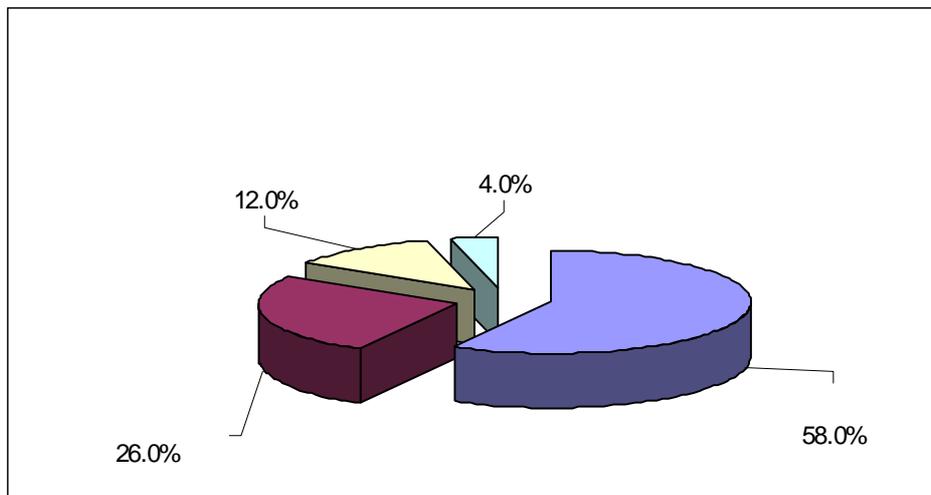


-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지급유무에 대해서는 60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14.8% 뿐이고 이를 지급받지 않았음 74.1%,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았음 3.7%, 지급하는지 자체를 모름 7.4% 라고 응답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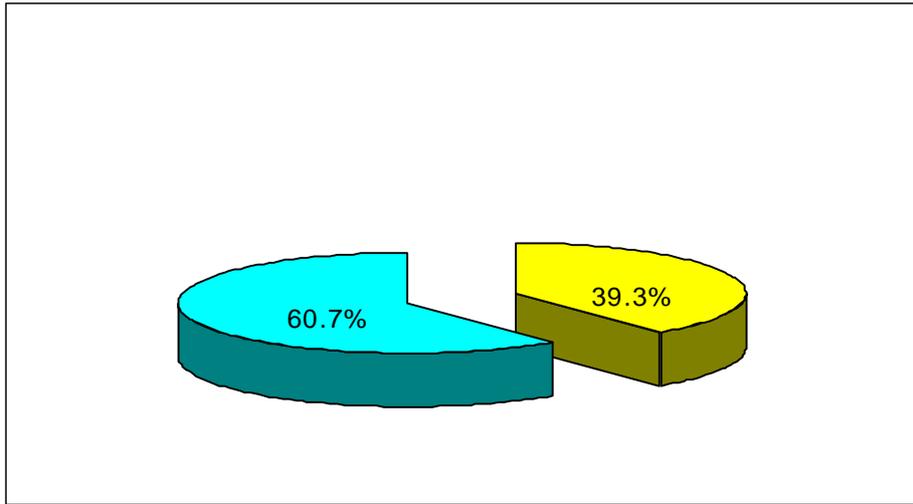
- 어음을 대신하여 구매자금대출제도 운영에 대한 문의에는

-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(58.0%), 이용하지 않는 업체(26.0%), 향후 이용할 계획인 업체(12.0%),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계획 없음(4.0%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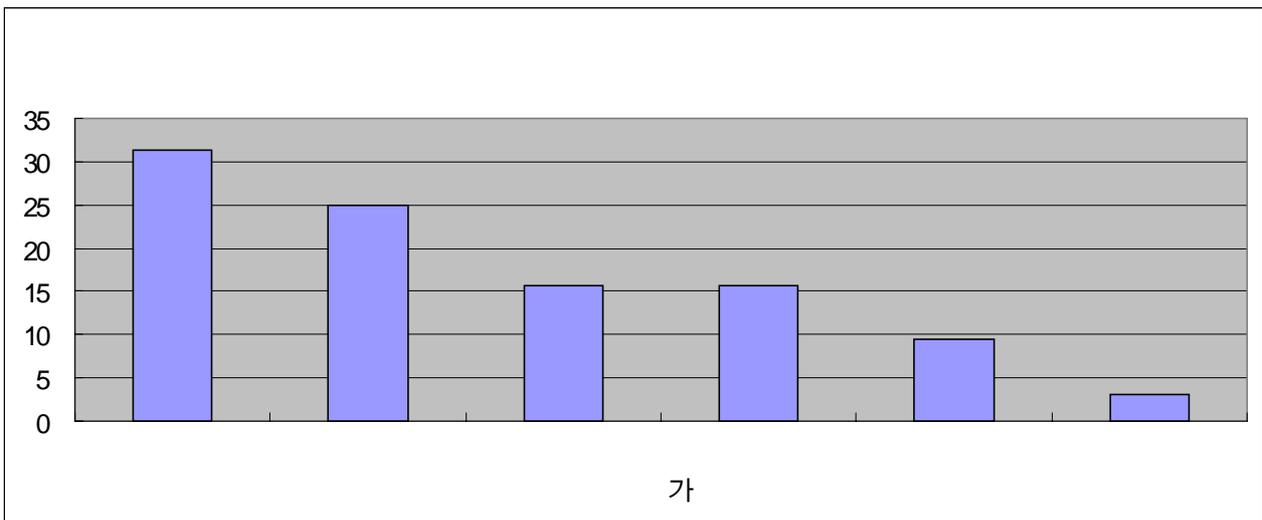


다.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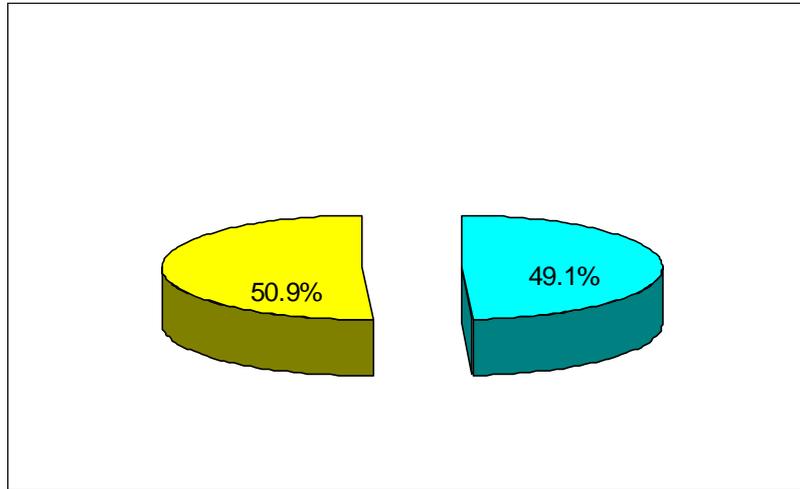
-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39.3%가 감액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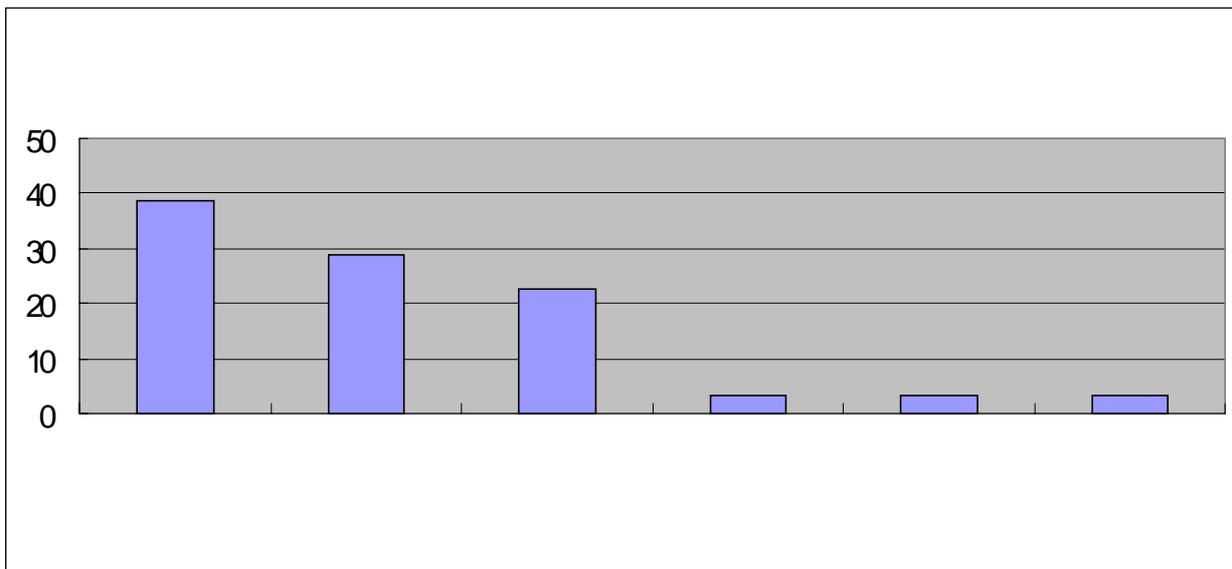
- 또한 감액요구를 받았다면 그 이유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이익확대(31.3%), 납품지연(25.0%), 유통업체의 판매부진(15.6%), 타 납품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(15.6%), 상품의 하자(3.1%), 기타(9.4%) 순으로 조사됨



□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49.1%가 반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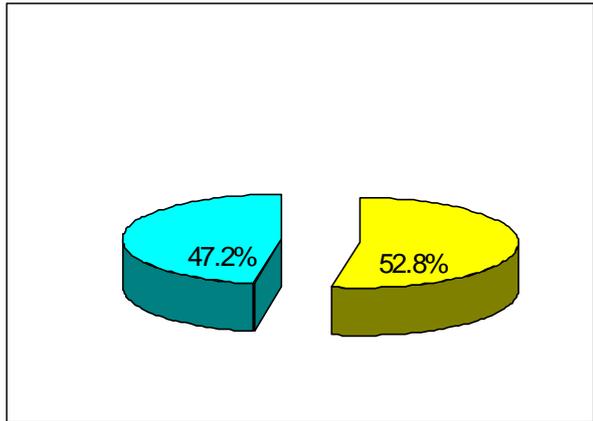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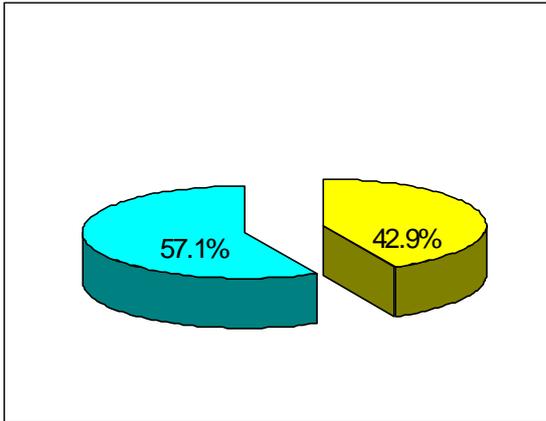


○ 또한 반품요구 이유로는 판매부진(38.7%), 제품하자(29.0%), 재고 상품(22.6%),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(3.2%), 수수료율이 높은 타 상품으로 대체(3.2%), 기타(3.2%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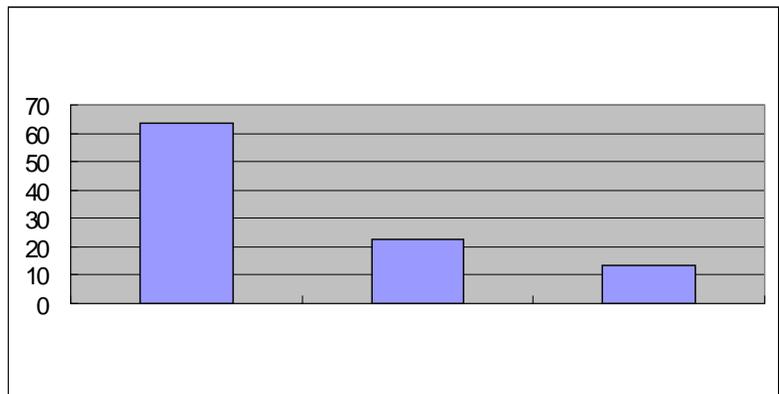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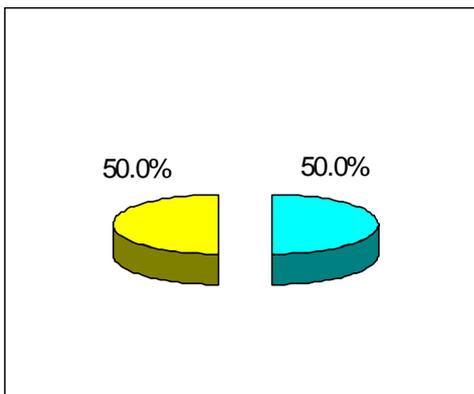


□ 상품권 구매 및 광고비 부담

- 납품업체중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상품권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가 42.9%로서 평균 2,716 천원으로 조사됨
- 또한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광고비의 비용분담을 요구받은 경우가 52.8%로서 평균 1,990 천원인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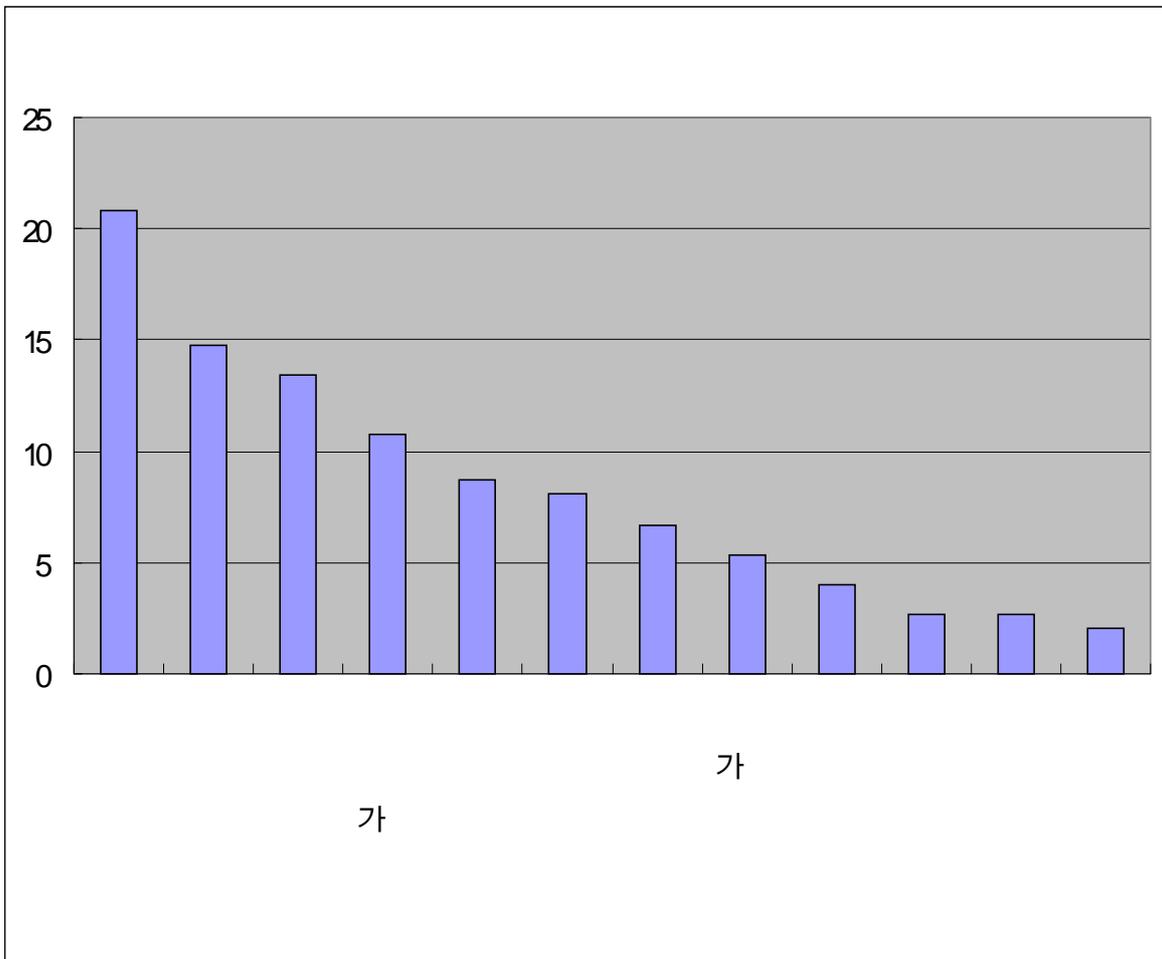
- 납품업체중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매장위치 변경요구를 받은 경우가 50.0%인 것으로 조사됨
- 또한 변경요구를 받은 이유로는 판매부진(63.6%), 수수료율이 높은 타 상품으로 대체(22.7%),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(13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라. 거래애로 및 건의사항

□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

- 판매수수료가 높음(20.8%), 거래의 지속여부에 대한 불안(14.8%), 매장위치 변경문제(13.4%), 광고비 부담 전가(10.7%), 경품류 제공 강요(8.7%), 관촉사원 파견 강요(8.1%), 부당반품처리문제(6.7%),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(5.4%), 납품중소기업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적음(4.0%), 납품대금 지연(2.7%), 기타(2.7%), 상품권 구매 강요(2.0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□ 공정거래관행을 위한 건의사항은

- 높은 판매수수료 인하
-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단가인하 금지
- 불공정한 매장위치 변경 금지방안 마련
-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반품처리
- 납품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
- 관측사원 파견 강요, 광고비 부당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태 예방책 강구 등이 있음